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7

발의연월일: 2020. 6. 29.

발 의 자:김형동·배준영·강민국

김정재 • 이종성 • 임이자

김용판 • 권명호 • 송언석

김은혜 · 김성원 · 김석기

김영식 · 정운천 · 이철규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와 더불어 인력의존도가 높은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이에 대한 법 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업용 지능형 로봇"이란 농림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분야에서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2(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 런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 립·시행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1</u> 의2. "농업용 지능형 로봇"이
	란 농림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 분야에서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
	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
	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
	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u>를 말한다.</u>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
립 등) ① (생 략)	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 <신 설></u>	6.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u>6.</u> (생 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7조의2(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 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 성,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 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 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